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 | |
|----------|-----|
| 의안 번호 | 633 |
|----------|-----|

발의년월일: 2019년 4월 26일

발 의 자: 신원철,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 (110명)

1. 주 문

-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노력의 결과, 「지방의회법안」 국회 제출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뤄냄.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으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로 시민사회에 우리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은 ‘자정결의안’을 만들어 전달함과 동시에 전체의원 110명의 동의와 결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는 한편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2. 제안이유

- 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출범 이후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지방분권 추진의 선두주자로 2018년 2월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제출을 비롯해 2019년 3월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반영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이뤄냄

나.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들로 인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결의안’을 만들어 지방의회 스스로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자정노력의 진정성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시켜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함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이 송 처 :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평한다. 대한민국의 열악한 지방의회 환경과 잘못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자 가장 큰 목소리로 현실에 맞섰고, 지방의회 역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그 결과 작년 2월 「지방의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반영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고, 특히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등은 지방의회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준엄한 시민사회에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로 우리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정결의안’을 만들고,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추진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 개

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에 다가서는 노력이 있어야만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과정에서 우호적인 여론조성은 물론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 ‘자정결의안’을 전달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며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향후 지속성 있고, 현실적인 협력과제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은 시민사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자정의 목소리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 모두의 동의를 거쳐 공동 발의하여 자정노력의 진정성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또한 이를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시켜 ‘사랑받는 지방의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110명 의원 모두는 ‘자정결의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시민사회의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 더욱 강력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 총 9개 분야 24개의 추진과제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자정노력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둘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 장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고, 지방의회 자정노력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셋째,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하여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하며, 지속성 있는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9. 4. 2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

| 분 야 | 결 의 내 용 |
|-------------------|--|
| 정책지원 전문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시 의원의 친인척 배제(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실명공개) ▪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 의원 사적업무 지원 금지 |
| 공무 국외연수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계획, 심의 결과, 방문결과보고서 등 홈페이지 공개 ▪ 예산사용내역 공개 및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 시민단체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한 사전심의·심사 강화, 국외연수 결과 평가 ▪ 국내연수(간담회, 시찰, 세미나 등) 계획 및 개최결과 공개 |
| 지방의원 겸직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목적의 겸직 제한(소속 상임위 관련 영리목적 겸직 금지) ▪ 겸직신고 공개, 겸직신고 위반 및 미신고시 징계 규정 도입 |
| 영리행위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백지신탁, 이권개입 금지, 취업청탁·인사개입 금지 명문화 |
| 의정비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심의위원회 등 의정비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강화 ▪ 의정비 지급기준 공개 |
| 지방의회 정보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률, 조례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홈페이지 공개 |
| 지방의회 시설개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회기 시 회의실 등 시민개방 |
| 윤리특별 위원회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사전교육 강화(인권교육, 청렴교육, 젠더감수성교육 등 교육이수 의무 규정) ▪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 ▪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공개 |
|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공약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공개 ▪ 지방의회 회의 인터넷 공개 및 상임위원회 시민 방청 허용 ▪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선심성 예산 근절,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 의회권한 남용 금지(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법정 처리기한 준수) ▪ 주민감시단 제도화 및 지방의회 공개감사 요청 ▪ 표결 실명제(안건별 찬반공개) ▪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의무화 및 수익보고(소득신고) |